



산업보건 주요뉴스



고용노동부, 질식·가스 중독 경보 발령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7월 20일,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 저류조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작업 당시 근로자는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기하던 원청 작업관리자 2명이 쓰러진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저류조로 진입하다가 추가로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질식 재해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 재해 196건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과 같은 오페수처리·정화조 작업에 따른 황화수소 중독·산소결핍이 52건(2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질식 재해의 치명률은 47.4%로 산업재해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지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어렵지 않다.

첫째, 밀폐 공간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관리감독자는 작업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식에 이르는 유해가스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밀폐 공간 내부가 안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밀폐공간의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근로자는 밀폐 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의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 공간에 보호구 없이 진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부터 질식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들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 등에 대해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에 착수한다. 아울러, 상·하수도 등 밀폐 공간을 다수 관리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여름철 질식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22년 상반기 사망사고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9.3%), 20명(△5.9%) 감소 (업종별) 건설업 147건(155명), 전년 동기 179건(179명) 대비 32건(24명) 감소, 제조업은 92건(99명)으로 전년 동기 85건(89명) 대비 7건(10명) 증가, 기타업종은 64건(66명)으로 전년 동기 70건(72명) 대비 6건(6명) 감소 (사고유형별) 떨어짐, 끼임 유형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에 서는 증가 (사고원인별)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4.4%), 추락위험방지 미조치(15.8%),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실시(12.0%) 순으로 나타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이후 50인(역) 이상 사망사고는 87건(96명)으로 전년 동기 109건(111명) 대비 22건(△20.2%), 15명(△13.5%) 감소 (업종별) 건설업 36건(37명), 전년 동기 54건(54명) 대비 18건(17명) 감소, 제조업은 34건(41명)으로 전년 동기 36건(37명) 대비 2건 감소(4명 증가), 기타업종은 17건(18명)으로 전년 동기 19건(20명) 대비 2건(2명) 감소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7.1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1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5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향후 1,800여 개소 모두 점검 예정).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하여,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해 산업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업이 자율의 안전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11.~8.19.)」을 운영하면서 현장점검의 날(7.13.)에 맞춰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 명을 동원하여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실내외 작업을 할 때는 예방수칙을 이행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규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가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만들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와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